등록번호	위생과-10873
등록일자	2015.8.7.
결재일자	2015.8.7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	위생기획팀장	위생과장	보건소장						
신은영		이교명	이효춘	08/07 홍혜정						
협	위생관리팀장 代홍창무 협									
조										

🏅 음식문화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

2015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계획



보 건 소 위 생 과

ื 음식문화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

2015년 모범음식점 재심사 계획

모범음식점 재심사 과정을 통해 음식문화 향상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- 구청장 지시사항 제43호 236번('15,7,6, 모범음식점 전면 재점검 실시) -

Ⅱ 관련근거

-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
- 식품의약품안전처 모범업소지정 및 운영관리규정

Ⅱ 개 요

● 기간 : 2015년 7월~10월

● 대 상 : 모범업소 262개소

	구 분 합계		한식	일식	양식	중식	뷔페	분식
2	2015년 상반기	262	197	32	15	12	5	1
	신규지정	6	4	_	_	1	_	1
	기존업소	256	193	32	15	11	5	_

● 재심사 일정

<1차> 사전조사 (명의변경, 행정처분 등 업소 현황 파악)	7 월 ➾	<2차> 현장확인 (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)	8 월 압	<3차> 재심사대상 업소점검 (공무원)	9 월	<4차> 재심사 (음식문화개선 운동추진위원회)	10 월 라	지정·홍보 ·사후관리 ^(위생과)
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● 심사지표(별첨)

-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에 의거 평가점수 85점 이상
 - : 건물의 환경, 주방, 원재료 보관시설, 종업원 서비스, 가격표시 등 평가
- ●「좋은식단」이행기준 준수업소
 - : 8가지 공통기준 및 한식·일식·뷔페 등 업태별 개별기준 평가

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

● 문제점

- 명의, 주 취급음식, 소재지 등의 수시변경
- 불법 모범업소 표지판 부착
- 위생 및 서비스 불량 업소, 바가지요금 업소 등 국내외 관광객 불만 증가
- 모범업소 영업주의 의식 부족
- 모범업소 지정 홍보 및 신청 방법의 다양화 필요
- 다양한 '음식점 인증제도'에 대한 소비자 불신

● 개선방향

- 재지정 모범업소 철저한 사후관리
- 표지판 불법 부착업소 현황조사 및 회수조치
- 관광지 주변 모범업소 우선 지정
- 교육·홍보 강화 및 영업주 동기부여로 모범업소 지정 장려
- 관련 직능단체·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홍보, 업소 추천 등 협업체계 구축
- 국민권익위원회 인증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 반영 추진

Ⅳ 세부추진계획

● 사전조사

- 조사기간 : 2015. 7월
- 재심사 대상 업소 : 38개소※ 명의변경 25건, 주 취급음식 변경 15건, 소재지 변경 4건
-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후 지정 미취소 업소 : 0개소
- 그 밖에 폐업, 민원 빈발업소, 위생불량 업소 등 : 2개소

● 현장확인 실시

- ◉ 점검기간 : 2015. 8월
- 점 검 반 : 1명 5개반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)
- 점검대상 : 262개소(현 지정 모범업소 일제점검)
- ◉ 평가방법
 - 모범업소 체크리스트(별첨)
 - 위반사항 및 취약부분 시정 지시
 - 건강음식점(저염실천) 지정 신청 시 가산점 부여
- 조리장 공개 CCTV 설치 및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배부 등 업주 교육 실시

● 재심사 대상업소 담당공무원 확인

● 점검기간 : 2015. 9월

● 점 검 반 : 위생과 공무원

● 점검대상 : 사전 현장확인 결과 부적합 업소

● 점검방법 :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 및 「좋은식단」이행기준(별첨)

● 점검결과 :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 의뢰

● 재심사

● 심의·의결일정 : 2015. 10월

● 심의·의결기관 :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- (사)한국외식업중앙회중구지회

● 심의·의결결과 : 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서 통보

Ⅴ 향후 추진계획

● 지정 모범업소 사후 관리

- 재지정증 교부 및 표지판 파손·노후 업소 교체
- 재지정 업소 표지판에 재지정 기간 알림 스티커 부착



- 모범업소 관련 민원 제기 시 점검 및 행정처분 철저
- 관광지 주변 업소 관리
 - 주요 관광지 내 모범업소 대상 바가지요금 단속 실시(미스테리샤퍼 활용)
- 지정취소 업소 지정증·표지판·융자금 즉시 회수 및 홈페이지 게시 중지
- 표지판 불법 부착업소 현황 파악(외식업중앙회 협조) 및 회수 조치

●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 지원으로 모범업소 지정 장려

- 모범음식점 홈페이지 내 업소 사진 및 정보 게시 : 소비자 별점 평가 항목 신설
- 우수 모범업소 선정 및 영업주 표창 수여
- → 홈페이지 별점 평가결과 및 평판, 외식업협회 추천 등 종합 평가하여 선정
- 외국어 메뉴판 제작 배부 : 4개국어(한·영·중·일), 명동·동대문 등
- 인센티브 물품 지원 : 업소당 10만원 상당
- 구 정기 간행물·관광 홍보물·각종 행사 등 모범업소 이용 홍보
- 식품진흥기금 운영자금 우선 융자
- 지정 후 2년간 위생감시 면제(민원 발생 시는 제외)

● 모범업소 지정 확대 추진

신 청					7	
▷ 관광지 주변 음식점	즉	접수현장확인 지정기준	15 일	심의	7 일	지정·
▷ 직능단체,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업소	시	지하기는 적합여부	_ 내	(음식문화개선	내	관리
▷ 서울시 위생등급제 참여업소	\Rightarrow	(위생과)	 □	운동추진위원회)		(위생과)
▷ 신규 영업신고 업소, 지정취소 업소			ĺ		7	

- 중구 일반음식점 5,700여 개소의 5% 이내 지정
-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지정 신청 시 우선 지정

● 모범업소 영업주 위생친절교육 실시

◉일 시:11월 중

● 대 상 : 모범업소 영업주

● 장 소 : 충무아트홀(예정)

● 교육방법 : 외부 강사 위탁교육

● 내 용 : 고객만족 서비스, 마케팅 전략, 위생관리 등

※ 별도 계획 수립 시행

● '음식점 인증제도' 개선

근 거 :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단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

● 내 용 : 인증음식점 선정절차·사후관리·재심사 기준 개선 등

● 향후 식약처 예규 개정 및 서울시 조례 변경·계획에 맞춰 반영 실시

Ⅵ 소요예산

- 현장확인 활동비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
 - 1일 50천원 x 11일 x 5명 = 2.750천원
 - ※ 예산과목 : 위생과,식품의약안전,식품및공중위생안정성관리향상,식품위생업소 지원(식품진흥기금),위생단속활동지원,일반보상금
- 영업주 교육비
 - 1,000천원(강사료, 대관료, 현수막 등)
 - ※ 예산과목 : 위생과,식품의약안전,식품및공중위생안정성관리향상,식품위생업소 지원(식품진흥기금),위생관리및홍보,일반운영비

Ⅷ 기대효과

- 철저한 모범업소 관리 및 홍보로 음식문화 향상과 관광활성화에 기여
- 공정한 재심사로 모범음식점 신뢰 확보 및 업소 간 민원 발생 방지
- 모범업소 및 일반음식점 업주들의 경쟁력 강화로 외식업 발전에 기여
- 지속적인 위생 관리 및 물품 지원으로 외식업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
- 붙임: 1, 2015 모범음식점 재심사 대상 명단 1부.
 - 2. 모범음식점 지정기준 및 좋은식단 이행여부 점검표 각 1부.
 - 3. 모범업소 체크리스트(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) 1부. 끝.